

결 재	담당자	기관장
	 2024.03.13	 2024.03.13

2024년 용암지역아동센터 안전관리계획서



2024. 03. 13

용암지역아동센터

안전관리계획서 개요

1. 목 적

용암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체계

자위소방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자연·사회 재난, 국가 재난의 위험상황에 대비 및 대응한다.

3. 소방계획

소방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2년간 용암지역아동센터에 보관한다.

* 안전관리자 : 상가건물은 (주)부영 및 상가에서 관리함.

4. 피난계획

피난시설, 방화시설 현황 등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피난 안내도와 소방·방화시설에 대해 교육 및 게시한다.

5. 응급대처매뉴얼

일상생활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다친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한다.

6. 비상대응훈련계획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교육훈련 및 평가한다.

[참고자료]

- 1)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 2)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응급처치 매뉴얼
- 3) 행정안전부 /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 목 적

- 센터와 관련된 위험과 재난을 이해하고 예방하고 대응, 복구하는 과정을 계획한다.
- 센터 내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대응절차 및 행동조치사항 등을 규정한다.
-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안전교육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센터 내·외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한다.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급한다.
- 아동·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센터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가정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국가재난의 종류

-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적용범위

- ◆ 범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청주시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필요한 재난상황에 적용하며, 센터 내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2.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체계

1) 기관수행인력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자위소방대			
	[지휘통제 및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방호안전]	[피난유도 및 응급처치]
보조인력 [보조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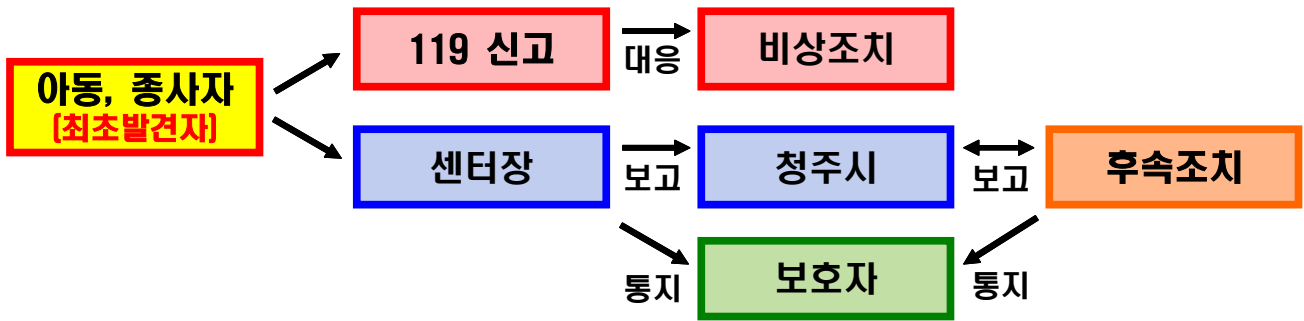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기 능
청주동부소방서(119)	043-251-0119	화재진압, 구조
한국병원(응급의료)	043-222-6177	응급대응기관
광명교회(부영상가 총무)	010-6408-5668	상가 내 대응
(주)부영 고객센터	1577-5533	A/S신청 및 처리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	043-224-9016	재난구호활동 및 전기설비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10-4552	전기재난 및 사고 대응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1899-1744	기후 및 오염재난 대응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042-629-3114	수질재난 대응 및 처리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30	화학물질사고 대응
청주상당경찰서(112)	043-280-1259	재해, 재난 등 대응
청주시(아동보육과 아동지원팀)	043-201-1923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 아동 및 학부모 비상연락망

순번	아동명	아동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긴급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재난위기 대응체계



○ 재난 발생시 발견자 및 조직별 역할

구 분	실무자	역 할
최초발견자		· 119신고 및 센터장 보고
지휘통제 및 비상연락	홍귀자 (센터장)	· 사안 논의 및 사고처리 방안 결정·지시 · 보호자 비상연락 및 사고 통지 / 청주시 보고 · 센터 대책 수립 및 보호자에 대한 대응 · 운영위원회, 보호자 협조체계 구축
초기소화 및 방호안전	이준원 (복지사)	· 초기 대응(화재진압, 전기 및 가스 차단, 방화문 폐쇄) · 아동현황파악 및 아동 안정(부상자 확인) · 최초 사안 조사 및 현장 확인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및 보고
피난유도 및 응급처치	서선영 (복지사)	· 행동요령 지시 및 대피유도 · 구호조치 및 병원 후송 동승 · 대상 아동 학부모 연락

○ 위기 단계별 대응 기준

-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지진, 지진해일, 화산폭발, 화재, 붕괴, 방사능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경보수준에 따라 센터장은 상황 파악 후 대응반 구성, 비상연락 및 통보, 대피 및 응급처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진행한다.

❖ 위기경보수준

- ◆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 ◆ 주의(Yellow) :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 ◆ 경계(Orange) :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 심각(Red) :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3. 소방계획

1) 화재 예방 교육 및 훈련

-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실시
 -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화재 예방 및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소방훈련 실시
 -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화재 신고 및 초기 대응

- 화재가 올릴 때

구분	대응방법
알리기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대피방법 결정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으며,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대피방법을 결정한다.
신속한 대피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신속히 대피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119신고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한다.(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한 경우 속히 신고하며,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대피 후 인원확인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상가주차장으로 재집결 후 인원을 확인하며,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준다.

- 불을 발견했을 때(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한다.
 -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한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다.
- 화재시 119 신고 요령

신 고 방 법
① 119를 누르고 불이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예시) 센터 주방에 불이 났어요. 청주용암부영아파트상가 2층예요.
② 주소를 알려준다. 예시) 상당구 월평로249(용암동 2060번지)예요 / 상당고등학교 큰도로 맞은편이에요.
③ 소방서에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 화재신고 및 통보
 - 화재 발생 장소와 화재의 유형을 가능한 한 설명하며, 신속, 정확, 대피를 우선으로 항상 침착하게 대처하고 절차에 맞추어 활동한다.

3) 화재 대피 경로 안내

- 대비경로 안내 및 비상구 표시
 - 대피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된 안내도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 아동·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아이콘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비상구는 눈에 띄는 표시를 해두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4) 비상소집 장소 지정

- 재집결지 안내
 - 안전한 비상소집 장소를 사전에 지정한다.
 - 모든 아동 및 종사자들이 해당 장소를 숙지하도록 한다.
 - 비상소집 장소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위치 안내
 -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의 위치를 모든 종사자 및 아동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5) 주요 업무 분장

센터장(홍귀자) 지휘통제 및 비상연락	복지사(이준원) 초기소화 및 방호안전	복지사(서선영) 피난유도 및 응급처치
• 소방안전계획의 수립 및 확인 •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 및 정비 확인 • 각 반의 임무 및 숙달 상태 확인 • 기타 화재 예방에 대한 총괄 임무 수행 • 비상연락망 확인 및 숙달	• 소방안전계획의 수립 •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 및 정비 확인 • 후송 및 구호 계획의 수립 • 비상연락망 확인 및 숙달	• 피난로 및 비상구의 위치 확인 • 피난기구의 사용법 확인 및 숙달 • 구조/구급 장비의 비치 및 확인 • 비상연락망 확인 및 숙달

6) 안전관리자 지정

- 소방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2년간 용암지역아동센터에 보관한다.
- * 안전관리자 : 상가건물은 (주)부영 및 상가에서 관리함.
- 업무대행 : 안전관리책임관(홍귀자시설장), 부 안전관리자(이준원복지사)로 진정하여, 센터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잠재적인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을 담당하여 위험 예방 활동을 주도한다.

4. 피난계획

1) 피난안내도 작성과 개시

피난계획도 ESCAPE PLAN

부영상가 2층

화재 시 피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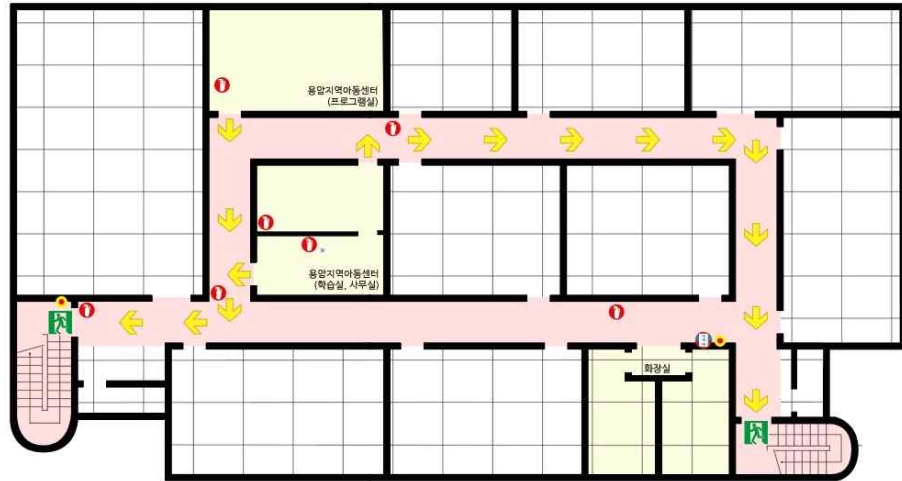
- ① "불이야"라고 외친다.
- ② 발신기(비상벨)를 누른다.
- ③ 피난동선을 따라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 ④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소화기 사용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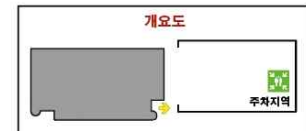
- ① 안전핀을 뽑는다.
- ②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 ③ 손잡이를 눌러 끌고루 분사한다.

범례

- 현 위치
- 소화전
- 재집결지
- 비상구
- 발신기
- 피난동선
- 소화기



부영아파트 상가동(아파트상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명로249(충암동))
설 계 날 짜 2024-01-23
계획도설계자 이 준 원
준 별 안 내 2층



- 피난안내도 작성
 - 피난구 및 피난계단 위치를 표시한다.
 - 출입구에서 피난구까지 방향표시를 한다.
 - 현재 위치에서 피난구까지 피난동선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기, 소화전 위치를 표시한다.
- 피난안내도 관리
 - 관리자는 피난안내도 부착 위치를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 훼손된 피난안내도는 즉시 교체토록 한다.
 - 각 실의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를 지정한다.

2) 피난장소 확보

- 미리정한 안전한 피난장소(상가주차장)로 피난한다.
- 피난 시 소방계획서를 챙겨 집결지로 이동하며, 피난장소에 도착하면 피난인원을 체크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
- 화재로 피난한 후 피난하지 못한 인원이 있으면 구조대원에게 명단을 주면서 피난 못한 사람이 있던 위치를 명확히 제시하면 구조가 쉬어진다.

3) 피난도우미(유도자)의 임무

- 지역별 근무자나 이용자에게 피난명령을 전달한다.
- 자력피난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피난을 지원한다.
- 가장 안전한 피난계단으로 유도한다.
- 각 실을 찾아가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이용자를 찾는다.
- 피난구나 복도에 있는 피난 장애물을 제거한다.
- 재난 상황과 피난 상황을 지휘관에게 수시로 연락한다.

4) 피난절차

1단계 : 피난준비

- 피난경보
 -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통보되면 시설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피난 필요성을 알린다.
 - 피난에 필요한 물품(물수건 등)이나 휴대품을 소지토록 홍보한다.
 - 동반 피난자를 지정하여 같이 행동하도록 한다.

2단계 : 피난활동 개시

① 자력 피난이 가능한 이용자의 피난절차

- 이용자(아동·청소년)
 - 이용자가 최초 화재를 발견하면 '불이야' 외친 후 주변 이용자에 화재 발생을 알려 피난토록 한다.
 - 육성 및 화재경보를 울린 후 빠른 피난구를 통해 자력으로 지정된 피난장소로 피난한다.
 -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스스로 피난 도우미가 되어 동반하여 피난한다.
 - 피난행동을 할 때는 피난안내자의 지시에 따르고 독자행동을 금한다.
 - 막다른 복도에 도달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내자의 지시를 따른다.
- 시설 관리자 및 보조자
 - 이용자보다 더 침착한 행동이 필수적이며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면 이용자가 더 불안하여 큰 사고로 이어진다.
 - 관리자는 상황에 따라 앞에서 유도하거나 나누어진 복도 등에서 제자리에 서서 다음 피난자에게 피난 방향을 안내해야 한다.
 - 복도에 연기로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아 피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실(Room)을 선택하여 임시 피난시키고 구조대원의 구조를 기다린다.
 - 안전한 피난 방향을 이용자보다 먼저 파악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자력피난이 곤란한 이용자의 피난절차

- 이용자(아동·청소년)
 - 자신과 맺어진 피난동반자가 올 때까지 물수건으로 입을 가려 연기의 흡입을 최대한 막으면서 기다린다.
 - 피난도우미는 이용자를 먼저 안전구역으로 대피한 후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 시설 관리자 및 보조자
 - 사전에 층별로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재난시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한다.
 -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거동불편아동부터 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킨다.
 - 피난기구(구조대)를 통해 신속하게 피난층으로 이동시킨다

3단계 : 피난 후 행동요령

- 이용자(아동·청소년)
 - 피난 나온 시설 안으로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피난으로 당황하여 몸을 떨거나 경련우려가 있는 이용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호를 요청한다.
 - 부근을 살펴 같이 있던 동료가 없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 시설 관리자 및 보조자
 - 지정된 피난장소에 집결한 후 인원을 파악한다.
 - 인원 파악 후 피난하지 못한 인원이 있으면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에게 피난하지 못한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사용하던 방 이름이나 위치 등)
 - 피난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가까운 이용자들끼리 이야기하여 안정감을 찾도록 배려한다.

5) 소화기 사용법

-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사용한다.
-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 손잡이를 짹 움켜쥐는다.
-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6)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에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 ◆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후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5. 응급대처매뉴얼

*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응급처치>응급처치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1) 응급처치의 필요성

-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명보험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은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질병과 상처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상황을 고작 한두 번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기에 우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2) 응급처치(First Aid)란 무엇인가

-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또한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이처럼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처치할 줄 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본증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병원으로 옮겨 지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비록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도 실제 응급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응급처치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문제

- 응급처치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 동의 :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허락이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 * 명시적 동의·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

○ 화상

- 불,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며,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습니다.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맙시다.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맙시다.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 열로 인한 질환 예방

- 불,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며,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습니다.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맙시다.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맙시다.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 열 경련이 발생하였을 때는

- 더운 기후나 심한 운동 후에 주로 나타나며 땀을 흘림으로 신체의 전해질을 변화시켜서 손과 발, 복부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질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해주고 의식이 있는 경우 입으로 이온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 일사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 열 손상 중에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나는 것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누어두고 옷을 벗겨줍니다.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음료 또는 물을 줍니다.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 일사병은 보통 시원한 곳에서 안정시키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나 주위가 덥고 의식이 없어졌다고 하여 다 일사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열사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병으로 격렬한 신체활동이 있으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때로 잠긴 차량 안에서도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을 띠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주고 부채질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속

히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 뱀에 물렸을 경우

-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민간요법 지양,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
- 우선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119 또는 1339의 도움을 청한다.
-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팔 또는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에만 다음의 처치를 실시한다.
 -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는다.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꽉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1시간 이상)에는 진공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독을 빨아 낼 수 있다. 입에 상처가 있거나, 치아가 결손난 사람은 절대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는 안 된다.
-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입으로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 준다.
- 하지 않아야 할 처치
 -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않는다. 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않는다.
 -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는다.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부위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벌에 쏘였을 경우

- 쏘인 부위 벌침이 남아있으면 바늘이나 칼 등으로 제거, 없으면 신용카드로 긁어서 제거 후 2차 감염 방지 위해 비누와 물로 씻을 것
-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 또는 1339에 연락한다.
- 피부에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한다. 집게 등으로 제거할 때, 침에 남은 독을 짜서 밀어 넣게 될 수 있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대 준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시키지 않는다.

○ 과호흡증후군 응급처치

-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팔다리가 꼬이는 느낌이 들며 숨이 매우 가파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 약사와 상의하여 비상시 필요한 약품들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자리에서 똑바로 눕힌 후,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3)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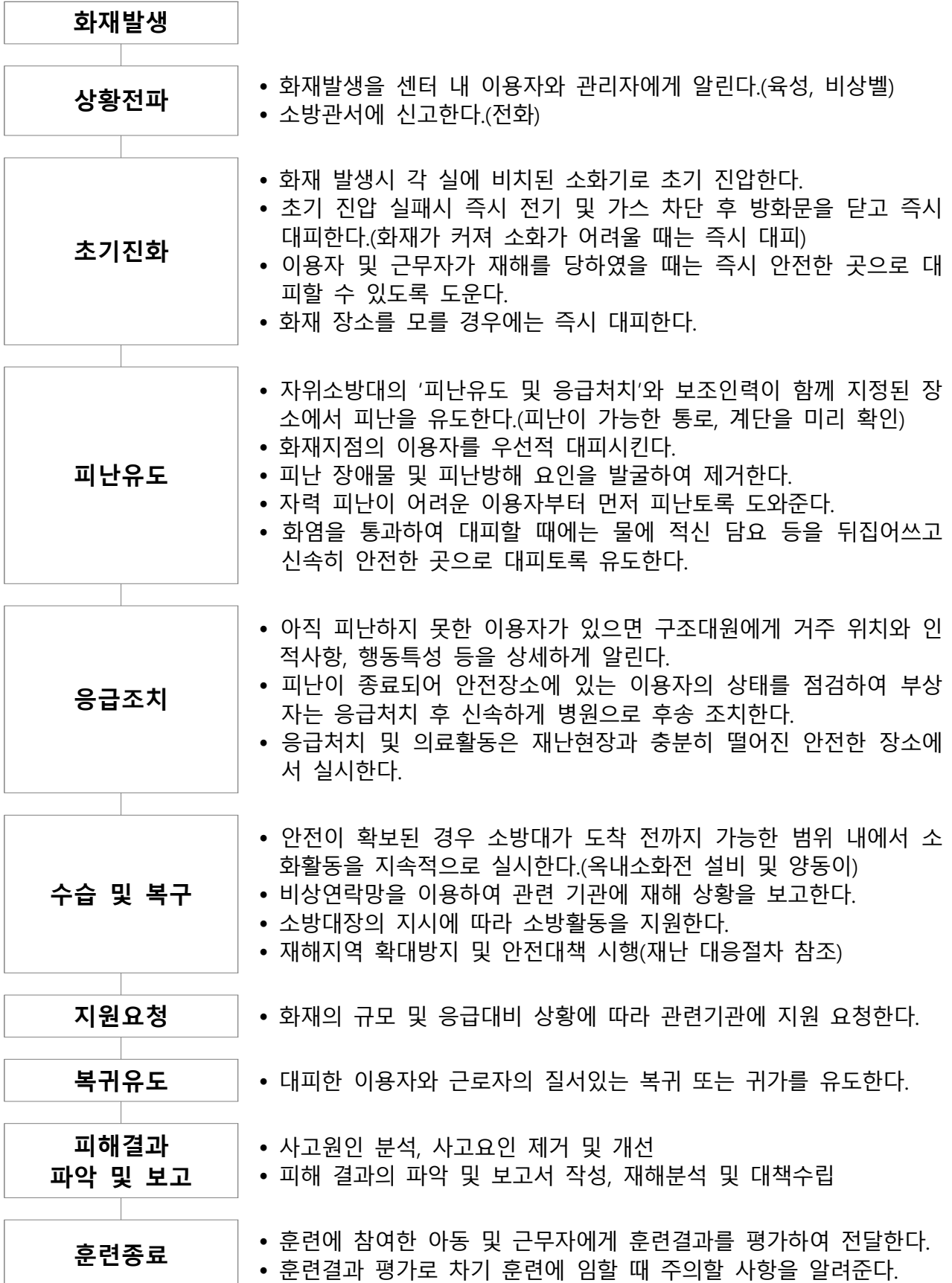
- 응급상황시 먼저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합니다.

4) 응급 환자관리 대책 및 처리절차

응급환자 관리 대책 구성		
상황대응반(복지사) 이 준 원	총 괄(센터장) 홍 귀 자	응급처치반(복지사) 서 선 영
• 센터 내 상황 보고 • 돌봄 지원 및 관리 • 사고 발생 관련 정보수집 및 보고 • 학부모 대응	• 응급처치동의서 또는 119 신고 • 보호자에게 연락 • 학부모 대응 및 지원 • 사고 발생 관련 정보수집 • 상황 보고 및 관리 • 차량지원, 치료비 등 지원	• 신속한 응급처치 • 응급처치동의서 기준 병원 이송 또는 119 신고 • 최초 상황 보고 • 이송 시 응급 상황에 동승 • 이송, 진료에 관한 기록
이송 의료기관 선택 및 처리절차		
○ 응급환자 이송 준비 • 신속한 응급처치를 한다. • 응급처치동의서 기준 병원 이송 또는 119구급차를 부른다. •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 ○ 응급상황에 대한 도움요청 • 1339(질병관리청) : 365일 24시간, 감염병, 만성질환, 예방접종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질병·건강 관련 정보와 1:1상담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 응급중상 및 이에 준하는 중상일 경우 • 119에 연락, 신속히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응급처치자의 응급처치 후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 응급처치반(서선영복지사) 또는 총괄(센터장)이 동승하며, 응급처치반(서선영복지사)이 동승할 경우 총괄(센터장)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 총괄(센터장) 또는 응급처치반(서선영복지사)는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이송병원을 안내한다. • 상황대응반(이준원복지사)는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총괄(센터장)에게 보고한다.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 이송의 경우 • 응급처치반(서선영복지사)는 응급처치 후 총괄(센터장)에게 보고한다. • 총괄(센터장)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토록 안내, 인계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경우 총괄(센터장)이 이송하며, 부재 시에는 응급처치반(서선영복지사) 또는 상황대응반(이준원복지사)가 이송하도록 한다. ○ 기타사항 • 총괄(센터장)은 해당 사고 경위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 처리한다.		

6. 비상대응훈련계획

1) 화재발생 피난 훈련절차



2)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 칭	2024 비상대응 훈련			
일시/장소	일자 : 2024년 7월 19일 / 장소 : 건물 내부 및 집결지			
종 류	대상	■ 자위소방대 ■ 이용자(아동·청소년)		
	이론	■ 강의식		
	실습	■ 기본훈련(합동)		
주관부서	용암지역아동센터			
참여대상	종사자 3명, 아동 31명(예정)			
참여기관	없음			
시나리오	프로그램실 내 전기 패널에서 절연이 손상되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			
교 보 재	교육자료(소방계획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메뉴얼)			
교육계획	• 화재 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 소화기 사용법 •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집결지 안내			
훈련계획	• 화재 시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 • 초기소화 및 방화구획 • 피난 및 집결			
평가계획	평가일시	2024년 7월 19일	평가자	홍 귀 자 (서명)
	평가방법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비 고. 교육운영(프로그램실), 훈련은 화재시나리오에 따라 진행

3)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작성일자				작성자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인원	평일		휴일		
		주간(11:00~21:00)	야간(: ~ :)	주간(: ~ :)	야간(: ~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비고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자위소방대	총원(명)	대장성명	부대장(명)	지휘통제(명)	비상연락(명)	초기소화(명)
		대장연락처	피난유도(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총원(명)	A조	B조	C조	D조	총
교육·훈련 결과						
인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총원(명)	참석	미참석	총원(명)	참석	미참석
일시/장소						
주요내용						
보완사항						
조치사항						

[재실자·거주자 대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소방훈련 결과						
일시/장소				☐ 자체훈련 ☐ 합동훈련		
참석결과	훈련교관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훈련보조재료						
훈련내용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훈련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